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3 . 9 . 19

시민행정위원회 전문위원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 당초 2003. 9. 2, 수정예산안 2003. 9. 15

○제출자 : 종로구청장

2. 위원회 회부

○회부일자 : 당초 2003. 9. 8, 수정예산안 2003. 9. 16

○상정일자 : 2003. 9. 19

3.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 산				금회추경
		소 계	당초예산	1회추경	간주처리	
합 계	206,121,506	179,070,255	161,528,175	10,174,398	7,367,682	27,051,251
일반회계	177,350,535	149,727,776	132,311,430	10,174,398	7,241,948	27,622,759
특별회계	28,770,971	29,342,479	29,216,745	-	125,734	-571,508
의료급여	80,337	76,000	76,000	-	-	4,337
주차장	28,690,634	29,266,479	29,140,745	-	125,734	-575,845

※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 15.1%

○일반회계 18.4

○특별회계 -1.9

- 의료급여 5.7

- 주차장 -2.0

4. 수정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세항	목	사업명	수정예산	제출예산	증 감
계		4건	2,025,000	2,025,000	±1,025,000
자치행정	민간이전	새마을회관건립비 지원	-	950,000	-950,000
인사관리	자산취득비	콘도회원권 구매	-	75,000	-75,000
서무관리	기금전출금	청사건립기금 전출	1,500,000	1,000,000	500,000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창성동 109~131간 도로개설공사	525,000	-	525,000

5. 추경재원

○일반회계 : 27,622,759천원

(단위 : 천원)

계	조정교부금추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27,622,759	27,540,694	32,500	49,565

○특별회계 : - 571,508천원

(단위 : 천원)

계	의료급여기금 보조금 사용잔액	주차장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주차장 보조금 사용잔액
-571,508	4,337	-595,569	19,724

6. 세입 간주처리 내역

(단위 : 천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수	예산액	회수	예산액
	1~13	7,241,948	1~9	125,734

7. 세출예산

○일반회계 재원배분

(단위 : 천원)

합 계		경상비		투자사업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4	27,622,759	94	7,303,747	90	20,319,012

※ 경상비 대 사업비 비율 : 경상비 26.4%, 사업비 73.6%

○일반회계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합 계	177,350,535	149,727,776	27,622,759	100
운 영 위 원 회	1,754,995	1,741,376	13,619	1.0
시민행정위원회	146,105,503	126,730,771	19,374,732	82.4
재무건설위원회	29,490,037	21,255,629	8,234,408	16.6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위원회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합 계	28,770,971	29,342,479	-571,508
시민행정위원회 (의료급여)	80,337	76,000	4,337
재무건설위원회 (주차장)	28,690,634	29,266,479	-575,845

○시민행정위 소관 주요 편성내용 : 총 23건, 18,394,568천원

〈경상비〉	-----	7건	6,799,636천원
- 문화상품 구입	-----		66,558천원
- 신청사건립기금 적립금	-----		1,500,000천원
- 상용직인건비 인상분	-----		552,867천원
- 국민건강보험부담분 인상분	-----		62,130천원
- 행정장비수리비 부족분	-----		60,0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	-----		312,420천원
-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		4,245,621천원

〈투자사업비〉	-----	16건	11,594,932천원
- 본관 조적건물 보수·보강공사	-----		80,000천원
- 전자결재시스템 보조기억장치 증설	-----		100,000천원
-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		1,828,584천원
- 청운동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		320,000천원
- 혜화동 청사 부지매입비	-----		360,000천원
- 송인2동 복합청사 신축	-----		4,000,000천원
- 지역소규모 편익사업비	-----		950,000천원
- 기록물 자료관 시스템	-----		258,000천원
-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		3,000,000천원
- 누상동 마을야산 체육시설 정비공사	-----		170,000천원
- 송인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		150,000천원
- 무악경로당 보수공사	-----		65,000천원
- 구립어린이집 놀이터 교체·설치	-----		50,000천원
- 보육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		91,000천원
- 홍제천정비사업 연구용역비	-----		100,000천원
- 보건소청사 보수공사	-----		72,348천원

8. 검토의견

○추경예산안 규모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061억 2,150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70억 5,125만 1,000원이 증가되어 15.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 총예산은 1,773억 5,053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76억 2,275만 9,000원이 증가되어 18.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287억 7,097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억 7,150만 8,000원이 감소되어 1.9%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경재원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총 276억 2,275만 9,000원으로서 서울시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추가분 275억 4,069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3,250만원, 시비보조금 4,956만 5,000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시민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총 예산은 1,461억 550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93억 7,473만 2,000원이 증가되어 82.4%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추경재원 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은 보조금사용잔액 433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항별 주요 검토내용

○주요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쪽 149)

주요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40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먼저 정부업무등의평가에 관한기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 소속 하에 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므로 동법에 따라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기본료는 50,000원, 초과는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2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자체평가위원회), 예산편성기본지침 쪽 87 참조】.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쪽 150)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 비용 4,669만 1,000원이 편성된 것은 2004.1.1부터 기록물관리법 및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적합한 정부표준 인증시스템인 신전자문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향후 도입 시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종합적인 제품 평가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구의 행정정보 정책에 부합되는 기능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표준인증시스템을 선정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적립금 (쪽 153)

신청사건립에 따른 기금 적립금 15억원이 편성된 것은 이번 회기에 기금조성과 관련한 조례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어 그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향후 신청사건립에 따른 총사업비 약 450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년도별로 투자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방재정운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쪽 154)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5억 5,286만 7,000원이 편성된 것은 2003. 8. 1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공공부문시설·환경관리상용직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2003. 1. 1부터 임금인상분(토목·하수분야 인상률 10.9%, 녹지분야 인상률 16.0%)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서 이는 25개 자치구의 공통적인 사항이며, 우리 구의 상용직 일용인부는 공원녹지분야 54명과 토목·하수분야 24명을 합하여 총 7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상용직 일용인부를 현 수준에 맞춰 적정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해화동청사 부지매입 (쪽 158)

해화동청사 부지매입비로 3억 6,000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먼저 재산승계 과정을 살펴보면, 현청사 부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재산임에도 불구하고 1977년 4월경에 우리 구로 재산승계시 행정착오로 우리 구 소유로 등기된 것으로서 서울시에서 지속적인 반환요구가 있어 불가피하게 동 부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매입할 경우 약 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관련 법령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재정운명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승인2동복합청사 신축공사 (쪽 158)

승인2동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 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보면, 승인동 226-2 위치상 토지 676.0㎡(204평), 건물 346.4㎡(105평)을 매입시 26억 5,700만원이 소요되므로 그 차액 13억 4,800만원을 불가피하게 삭감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부·용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용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투·용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서 “시·군 및 자치구는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투자심사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투자우선순위와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쪽 162)

사직동 284-1에 건립될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 30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먼저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156억 7,400만원(공사비 140억 1,000만원, 설계비 5억 1,200만원, 감리비 7억원, 보상비 및 기타 4억 5,200만원)으로서 시비 21억 6,000만원, 구비 135억 1,400만원이 소요되는 바, 열악한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시비지원에 상응하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2000년 5월 ~ 2006년 5월까지이며,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서 연면적은 6,756㎡(2,043평)이고, 주요시설은 지하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주차장, 전기시설 등이며, 지상은 공연장, 체육관, 다목적강의실, 문화전시실, 휴게실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제천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쪽 165)

홍제천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종로구 홍지동~평창동 구간으로 8.8km이고, 사업기간은 4개년(1차)이며, 중점추진사항으로는 ①홍제천 정비분야에 분류하수관정비, 건천화 방지대책, 수질보전대책, ②주변경관보전 분야에 지장물 철거, 녹지대 조성, 제방 개보수, ③문화·역사탐방 분야에 자연부락 보존 및 활용, 주변 문화재 복원 및 탐방로 발굴 등 다목적인 정비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산출물에 따라 각 기능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홍제천은 한강의 제1지류로서 관리주체는 서울시이며, 우리 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하수관 정비나 녹지대 정비 등에 대한 소요비용을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부족분 (쪽 166)

2003년 2월 24일 서울시와 서울시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기본급이 종전 1만 7,600원에서 2만 1,400원으로 21.6% 인상됨에 따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인상되어 인건비 인상분으로 13억 8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2003년 12월 31일 퇴직예정자 25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 29억 4,553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003년 7월 31일 현재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지역 및 가로환경미화원 242명, 공중변소 관리인 1명으로 총 243명이 되는 바, 향후 퇴직인원에 총원 여부와 적정인원관리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9. 관련법령

○정부업무동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자체평가위원회)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 소속 하에 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평가계획·평가결과 그밖에 당해 기관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의 편성)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시·군 및 자치구 :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